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 제1조 적용범위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금 등의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7.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9.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수급자
10.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13.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14.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 수급자

15.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1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등 수급자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18.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대지급금 수급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 제3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 제4조 이자지급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 (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제5조 우대금리와 함께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제5조 우대금리

1.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 제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 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하며, 우대금리는 제4조의 이자계산기간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 6세 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 고객이 만 6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

### 제6조 입금제한

이 예금으로의 입금은 법령에 따라 제2조의 가입대상에게 지급되는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하며, 그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거래제한

1. 이 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2.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3.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4.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sup>주)</sup>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취소 또는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한다)에 따라 예금주가 직접 해당기관에 결제금액 또는 납부금액을 납부하거나(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예금주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sup>주)</sup>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 제8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2.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4.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 <부칙>

1. 이 특약은 2012년 0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3. 이 특약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4. 이 특약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5. 이 특약은 2015년 0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6. 이 특약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7. 이 특약은 2016년 0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8. 이 특약은 2017년 06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9. 이 특약은 2018년 0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0. 이 특약은 2018년 0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1. 이 특약은 2018년 0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2. 이 특약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3. 이 특약은 2020년 06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4. 이 특약은 2020년 09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15. 이 특약은 2023년 0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16. 이 특약은 2024년 03월 08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17. 이 특약은 2024년 08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